

— 구미시 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12월 1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12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12월 7일

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
- 출산휴가 시 업무공백 등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근거 마련

다. 주요내용

-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90일간의 출산휴가로 허가
- 이 경우 20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되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계약 하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(담당, 주무급 이상은 제외)

라. 참고사항

- 행자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표준안(2001.9.26)
- 전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(2000.6.15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구미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를 개정하는 내용임.
- 복무조례 제23조(특별휴가)2항중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 이 경우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휴가 기간 중 업무공백을 줄이고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고용계약에 의해 충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에 의해 11월이후 출산하는 공무원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.
-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